

## 이 의 신 청 심 사 결 정 서

이의신청 농업경영체	성 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
이의신청 내용	처분내용	통지서 (공고문) 번호	통지(공고) 일자		
		처분결과 및 사유			
	이의신청 의견				
심사결정	결 정	(수용, 기각)			
	사 유				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이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또는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
또는 산림청장

직인